

의안번호	2125961
의 피 인	심상정의원
회 답 일	2024.3.8.
추계번호	23B5089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인 임차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3억 원, 2029년 48억 원 등 향후 5년 동안 227억원(연평균 4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43	44	45	46	48	227	4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와 도의 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2	안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6조의2제8항은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124억원, 2024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470억원, 2024년)를 보조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¹⁾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임차택시로서 현재 지방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임차택시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어서, 임차택시 운영이 지역간 평균 수준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6조의2제2항은 국가 또는 도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시(사업명: 바우처택시)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이용수요와 비용보조 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하므로, 본 추계에서 제외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²⁾

1)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특별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이 운영되고 있음.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행비용을 부담하는 유형은 임차택시이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차량은 '바우처택시'임. 임차택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기사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전용으로 이용되는 차량으로 비월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며, 바우처 택시는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택시로서, 평소에는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택시임.

2)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3. 11)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2.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의 가정에 기반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임차택시로서, 임차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지원규모를 현시점에 확정하기는 곤란함
 - 다만, 시도간 임차택시 보급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상 중증장애인 수 대비 임차택시 운행이 평균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평균 수준의 임차택시³⁾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보급 현황

(단위: 대수, %)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임차택시	
		임차택시	임차택시 대당 장애인수 ¹
전국합계	698,713	471	—
서울특별시	108,655	76	1,430
광주광역시	19,187	92	209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3.4	2.4	2.2	2.2	2.1	2.1	2.1	2.1

3) 임차택시 도입대수: 2018~2021년

(단위: 대수)

	2018	2019	2020	2021	평균
임차택시 수	289	382	436	471	—
전년대비 증가대수	—	93	54	35	61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년도 보고서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임차택시	
		임차택시	임차택시 대당 장애인수 ¹
대전광역시	20,063	90	223
울산광역시	13,397	21	638
제주특별자치도	10,082	43	234
경기도	151,686	63	2,408
강원도	27,727	22	1,260
충청북도	26,173	23	1,138
전라북도	34,245	30	1,142
전라남도	35,668	11	3,243
소계	446,883	471	950
부산광역시	47,824	—	—
대구광역시	32,253	—	—
인천광역시	38,002	—	—
세종특별자치시	3,216	—	—
충청남도	34,453	—	—
경상북도	45,871	—	—
경상남도	50,211	—	—
소계	251,830	—	—

주 1. 장애인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배치 법정기준인 보행상중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가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실태조사」 2021.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임차택시 1대당 장애인 수가 평균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전국 평균 수준의 임차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임차택시는 전국적으로 406대로 예상

○ 임차택시를 운영중인 지역의 보행상 중증장애인 수는 446,883명으로 임차택시 1대당 평균 장애인 수는 약 950명(949명=446,883명÷471대)으로

4)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이하 생략)

나타남

- 임차택시는 필요한 물량을 추계기간 균분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임차택시 필요물량

(단위: 명, 대수)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산정 장애인수 (보행상 중증장애인)	임차택시		개정안에 따른 추가필요택시 수
		임차택시 (2021)	임차택시 대당 장애인수	
전국합계	698,713	471	1,483	406
서울특별시	108,655	76	1,430	-
부산광역시	47,824	0	0	50
대구광역시	32,253	0	0	34
인천광역시	38,002	0	0	40
광주광역시	19,187	92	209	-
대전광역시	20,063	90	223	-
울산광역시	13,397	21	638	-
세종특별자치시	3,216	-	-	3
경기도	151,686	63	2,408	97
강원도	27,727	22	1,260	7
충청북도	26,173	23	1,138	5
충청남도	34,453	0	0	36
전라북도	34,245	30	1,142	6
전라남도	35,668	11	3,243	27
경상북도	45,871	0	0	48
경상남도	50,211	0	0	53
제주특별자치도	10,082	43	234	-

주: 임차택시 대당 장애인수가 950명 이상인 지역은 추가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임차택시 단가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당 연 5,128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차택시는 2023년도 기준 78대로서, 운영예산은 40억원
 - 임차택시 운영비 단가는 연 5,128만원(=40억원÷78대, 2023년 기준)

[표 4] 임차택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임차택시 지원물량(a대)	81	81	81	81	82	406
임차택시 운영비 단가 (b, 백만원)	53.7	54.8	56.0	57.2	58.4	-
합계(a×b)	4,347	4,443	4,536	4,631	4,787	22,744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사업비로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